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세사 제도 운영을 위해 관세사회 위탁 업무에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업무와 함께 등록취소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경력산정 기준일은 각각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제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응시원서”를 “각 응시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1차 시험”을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차 시험 시행 19일”을 “시험 시행 19일”로, “제1차 시험 시행 10일”을 “시험 시행 1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3제2항제2호 중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 군사법원
제2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등록 및 갱신”을 “등록, 갱신 및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취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 (생략)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경력산정 기준일은 각각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응시절차)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바에 따라 <u>응시원서</u> 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절차) ①----- ----- ----- --- <u>각 응시원서</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u>제1차 시험</u>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4. ----- ----- <u>시험</u> ----- -----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
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
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

<신 설>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
청의 경우 세관장 소속의 세
관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
정기관

3. 4. (생 략)

5.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

5. 시험 시행 19일 -----
시험 시행 10일 -----

④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
0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
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지
원센터-----

3. 4. (현행과 같음)

5.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

<u>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 통군사법원</u> 6. · 7. (생략) ③ · ④ (생략) 제26조(관세사회 회칙) ① (생략)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u>등록 및 갱신</u> 2. ~ 5. (생략) ② (생략)	<u>른 각 지역 군사법원</u>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관세사회 회칙)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 <u>등록, 갱신 및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취소</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8